

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 (특별휴가) ①-⑤(생략) ⑥ 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제24조 (특별휴가) ①-⑤(현행과 같음) ⑥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3. 5. 18.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3. 4. 30. 마포구 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93. 5. 6.

다. 상정일자 : 제16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3. 5. 1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가. 제출이유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 등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서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 : 구청장이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위탁

○ 운영비보조 : 구청장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보조

○ 직원임용 :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

○ 지도·감독체계 : 구청장 및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을 지도·감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 행정영역의 확대에 따른 행정작용의 다양화 전문화로 인하여 행정기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양적으로 광범위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고 전문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동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동 조례안은 특정 민간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한 관련 규정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수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 시달 및 행정체계 등 적절한 제도적 보완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김성환 위원) : 이동도서관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마포구지회 회장에게 위탁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은?
- 답변(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법의 근거가 미비하며 새마을운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질의(김유현 위원) :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주민홍보가 부족하니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현재 이동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는 장서의 종류는?
- 답변(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홍보는 지역신문과 반회보에 게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이동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는 장서의 종류는 70%가 문학과 아동관계 도서임.
- 질의(유남렬 위원) :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6,500만원인데 이용실적에 비해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 답변(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 금년 현재 이동도서관 이용실적은 6,166명으로서 년간 18,000명으로 추산되며, 본사업은 문화사업으로서 돈으로만 평가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됨.
- 질의(유남렬 위원) : 금년도 예산 6,500만원을 각동에 배분하면 등당 270만원이 되는데 그 예산을 각동에 배분하여 동에서 문고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 답변(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 각동에 문고를 설치하게 되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장소와 인원이 필요하여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함.
- 질의(윤동현 위원) : 이동도서관은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가?
- 답변(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 '86. 5. 20 개관하였으며 새마을운동차원에서 서울시장의 지침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음.
- 질의(윤동현 위원) : 이동도서관의 순회지역은 24개동중 불과 14개동으로서 극히 저조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테 이에 대한 방안은?
- 답변(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 순회지역등

을 재검토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5. 토론판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년 4월 30일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직원임용등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 : 구청장→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위탁(안 제2조)
- 운영비보조 : 구청장→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안 제5조)
- 직원임용 :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안 제6조)
- 지도·감독체계 : 구청장 및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을 지도·감독(안 제7조)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 4.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5. 조례(안) :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 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마포구지회(이하 “구지회”라 한다) 회장에게 위탁한다.

제3조(사업)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 등 밝고

전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독서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 ②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지회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새마을문고중앙회 구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종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 새마을문고 지도자 2인 이상
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석견이 높은자 3인 이상

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구지회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지회 회장은 구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운영 최종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구지회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직원임용)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

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이하 "시지부회장"이라 한다)이 새마을문고 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② 이동도서관에는 1개 차량에 사서와 운전원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을 둔다.

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년도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하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구지회 회장의 이동도서관 설치·운영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 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지부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시지부회장은 제2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지회 회장을 지도·감독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이동도서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심사보고서

'93. 5. 20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3. 5. 10. 마포구 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93. 5. 13.

다. 상정일자 : 제16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93. 5. 17) 상정, 수정안의결. 제3차위원회 ('93. 5. 20) 상정, 번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축과장 김기대)

가. 제안이유

○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 법령에 규정되었던 많은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고, 또한 그동안 불합리하였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